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2. 5.>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68号書式] <改正2021年2月5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二輪自動車使用廃止届出書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 電話番号		
신고내용 届出内容	이륜자동차번호 二輪自動車の番号			
	신고사유 届出理由 <div><div>☐ 용도폐지</div><div>☐ 분실·멸실</div><div>☐ 도난</div><div>☐ 기타</div><div>☐ 用途廃止</div><div>☐ 紛失・滅失</div><div>☐ 盗難</div><div>☐ その他</div></div>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03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申請人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出張所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電子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出張所長が以下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出張所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又は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確認できない場合は、当該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人が自ら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대표자)
申請人 (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二輪自動車の使用届出済証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첨부서류 添付書類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二輪自動車のナンバープレート (滅失、紛失又は盗難の場合は除く)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警察官署が発行した紛失届出証明書又は盗難届出証明書 (紛失又は盗難の場合のみ添付) 1部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使用廃止の理由を証明する書類 (滅失又はその他の理由による使用廃止の場合のみ添付) 1部	

유의사항
留意事項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二輪自動車の所有者は二輪自動車の使用を廃止したい場合は、その理由が発生した日から15日以内に届出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自動車管理法」 第48条第2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は、関連する規定に基づいき過料が科されます。(「自動車管理法」 第84条第3項第2号)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携帯) 電話番号は、届出人の二輪自動車管理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案内等の便宜を提供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ご記入いただきいて変更が生じた場合は管轄登録機関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し、ご本人が望ま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結構です。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